

대학원 장학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의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대학원의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의 지급은 법령 또는 교외의 장학기관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장 학 금

제 3 조 (장학금의 구분) 대학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교내 장학금과 교외 장학금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7. 9. 1)

1. 교내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조교장학금
- 나. 성적장학금
- 다. 외국인장학금
- 라. 면학장학금
- 마. 교직원장학금
- 바. 가족장학금
- 사. 공무원장학금
- 아. 모교장학금
- 자. 교사장학금
- 차. 봉사장학금
- 카. 연신원장학금
- 타. 직장인장학금
- 파. 특별장학금

2. 교외장학금은 외부장학재단, 공공기관 또는 기타 단체가 장학 대상자를 지명하거나 선정 의뢰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 가. 산학협동재단장학금
- 나. 신학장학금
- 다. 기타 교외 장학재단에 의한 장학금

제3조의2 (지급대상) 본교 대학원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2. 연구조교 또는 실습조교
- 3.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학교법인 호서학원 임직원 포함)과 직계자녀(배우자 포함) 또는 산학협력단 직원
- 4. 교내 각 부서에서 근로봉사하는 대학원생
- 5.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6. 외국인 학생
- 7. 본교(평생교육원 포함) 출신자(학부, 석사)

8. 공무원(군인 및 경찰 포함), 목회자, 직장인
 9. 특수대학원 원우회 회장 및 총무
 10. 기타 대학원 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
- [본조신설 2017. 9. 1]

제 3 장 장학생의 선정

제 4 조 (교내 장학생의 선정) 교내 장학생의 선정은 매 학기초로 하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 3. 1)

제 5 조 (교내 장학생 선정기준) 교내 장학생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3. 1, 2017. 9. 1)

제 6 조 (교외 장학생의 선정) 교외장학생의 선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교외 장학기관에서 해당학과와 인원을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결정한다.
- ② 해당학과에 대한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교외 장학금 수혜자의 학과간의 비율을 참작하여 대학원장이 배정하고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결정한다.
- ③ 교외 장학기관에서 수혜자를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한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제 4 장 장학금의 신청과 지급

제 7 조 (신청 및 절차) 교내 장학금의 수혜 희망자는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다음 각 호 중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1. 장학금 신청서(학과 주임교수 추천서 포함)
2. 교직원 장학 대상자는 재직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 등본 각 1부
3. 외국인 장학 대상자는 학과 주임교수 추천서, 국내거주 증명서 각 1부
4. 기타 장학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

제 8 조 (신청자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당해 학기에 장학금을 신청 할 수 없다.

1. (삭제 2012.3.1)
2. 근신 이상의 징계중이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기타 학칙 및 경고사항을 위반하여 학원 질서를 저해한 자

제 9 조 (수혜 기간의 제한) ① 장학금의 수혜 기간은 당해 학기를 원칙으로 하고 석사과정은 4학기(특수대학원은 5학기), 박사과정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 9. 1)

② (삭제 2012.3.1)

제 10 조 (지급시기)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내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 학기초로 한다.
2. 교외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교외 장학기관이 정하는 시기로 한다.

제 11 조 (지급 방법)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내 장학금의 지급방법은 해당 금액의 학비 감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교외 장학금의 지급은 교외 장학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 12 조 (지급중지)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급을 중지한다.

1. 학칙에 위반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판명 될 때
2. 장학금 신청절차 또는 신청 사유가 허위로 판명 될 때

제13조 (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9. 1)
[제목개정 2017. 9. 1]

부 칙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7. 9. 1)

교내장학생 선정 기준(제5조 관련)

장학종별	수혜자격기준	지금액	추천자
조교 장학금	본교에서 연구조교 또는 실습조교로 임명된 자	등록금 일부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성적 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자로서 대학원장이 장학생으로 추천한자	등록금 일부	학 과 주임교수
교직원 장학금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학교법인 호서학원 임직원 포함) 및 직계자녀(배우자 포함) 또는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등록금 일부	대학원장 산학협력단장
외국인 장학금	1. 교육부 장관이 추천한 외국인 학생 2. 외국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학생 3. 외국의 대학 총(학)장이 추천한 학생 4.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자매결연 대학의 학생 5. 총장이 장학대상자로 인정하는 외국인 학생	등록금 일부 또는 등록금 전액	학 과 주임교수
면학 장학금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이며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서 대학원장이 장학생으로 추천한자	등록금 일부	대학원장
근로 장학금	〈삭 제〉		
가족 장학금	가족(직계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2인 이상이 본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등록금 일부	대학원장
공무원 장학금	대학원에 입학한 공무원, 군인 및 경찰	등록금 일부	대학원장
모교 장학금	본교 학부(평생교육원 출신자 포함) 또는 석사학위과정 졸업자 중 상위 학위과정에 진학한 자	입학금 면제	대학원장
봉사 장학금	특수대학원 원우회 간부(회장 및 총무)	등록금 일부	대학원장
연신원 장학금	연합신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자	등록금 일부	대학원장
직장인 장학금	특수대학원에 입학한 직장인	등록금 일부	대학원장
특별 장학금	학생모집과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거나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자 중 각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등록금 일부 또는 등록금 전액	대학원장